

電子金融事故의 責任原則에 대한 研究

韓汀美*

차 례

I. 서 론

II. 전자금융거래 개관

1. 개념정리
2. 전자금융거래 관련 입법체계
3. 전자금융의 이용과 사고

III. 주요국의 관련 입법

1. 국제기구
2. 미 국
3. 독 일
4. 일 본
5. 소 결

IV.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원칙의 재정립

1. 서 설
2. 전자금융기관과 이용자간의 책임
3. 전자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업자간의 책임

V. 결 론

* 韓國法制研究員 招請研究員, 法學博士

I. 서론

최근 금융거래에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전자적 금융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거래의 5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1993년부터 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전자금융거래법」이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

전자금융거래법은 거래법²⁾과 사업법³⁾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일반법 형태로 제정된 것으로,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본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자지급거래를 필수적 요소로 하고 있는 전자거래 일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에 대한 논의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어 왔던 제9조 내지 제11조의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의 시행이후에도 그 타당성 여부 및 책임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며, 입증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당사자의 책임은 우선 직접당사자로서 전자금융기관과 이용자간의 책임과 간접당사자로서 전자금융보조기관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법 제정이 폐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자자금이체가 많아지면서 1993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부터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유보와 폐기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논의와 문제 제기를 통하여 재입법화가 추진되어 2006년 4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법 제정상의 자세한 논의 사항과 쟁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전자금융거래법안 설명자료」, 2005. 11 ;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금융법연구, 제1권 제1호, 2004 ; 손진화,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상의 쟁점과 전망”,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사관련법의 과제와 전망」, 상사법관련학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05. 7. 등 참조.
 - 2)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절차와 요소, 이용자보호, 책임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 3)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업무범위와 진입규제 및 검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논외로 한다.

직접당사자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승인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즉, 해킹과 같은 이용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였고, 간접당사자인 전자금융보조기관과 관련하여서 제11조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인 금융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나 정보통신외주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먼저 책임을 부담한 뒤에 이들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는 통신업체 등 비금융사업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성,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기관의 의무불이행 즉, 자금이체의 불이행이나 지연의 경우가 아닌 무과실인 경우에 까지 책임을 지게 규정한 이유는 첫째, 최근 인터넷 뱅킹 해킹 사건에서처럼 전자금융거래가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약자인 이용자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여 사실상 모든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던 것이고 둘째, 접근매체의 위조·변조의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접근매체의 관리책임은 금융기관 등도 함께 분담하고 있는 부분이며,⁴⁾ 접근매체의 보안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장치(SMS : Short Message Service 등) 등의 개발 등도 금융기관이 담당할 부분이라고 하고 있다.⁵⁾

4)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구조 허술 등으로 직원이 이용자의 ID, 비밀번호 등을 유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재정경제부, 전자금융법 설명자료, 2006.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전자화폐, 선불과 직불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등 과거에는 없었던 전자지급거래가 등장하고 새로운 지급수단을 중심으로 비금융기관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규제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가 모호하고, 이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로 전자금융사고와 지급결제리스크가 증대되면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은행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선진국의 책임원칙과 분담에 대한 입법례를 검토하여 우리법의 전자금융책임규정의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전자금융거래 개관

1. 개념정리

(1)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에 대해서 협의의 전자금융거래와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지급거래 즉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자금을 이동시키는 거래를 뜻하며,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전자화폐지급(electronic money payment), 선불전자지급(electronic pre-paid payment), 모바일지급(mobile payment) 등이 이에 속한다. 광의의 전자금융거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용어로서, 전자지급거래, 전자증권거래, 전자보험거래,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한다.⁶⁾

6) 손진화,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책임”, 경영법률 제17권 제1호, 2006. 10, 482쪽.

전자금융의 정의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래”라고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 규정”에서는 ‘전자금융업무’는 금융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전자금융거래’는 이용자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를 지칭하되, 일반적으로 개시에서 종료까지 비전자적 수단의 개입이 없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자금융이란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점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금융사고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사고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 전자금융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자자금이체감독규정(Regulation E)의 ‘전자자금이체’는 “금융회사에게 입출금을 명령, 지시, 또는 승인하기 위해 전자터미널, 전화기, 컴퓨터, 또는 자기테이프를 통해 개시되는 자금이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금융법상의 전자금융의 개념보다는 자금이체만을 포함하는 좁은 범위의 규정이다.

2001년 5월 BIS 바젤위원회의 『전자금융 리스크 관리준칙』에 따르면 전자금융을 “전자적 채널을 통한 소비자금융 및 소액의 은행상품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거액 전자결제 및 기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7) 전자적 수단에는 인터넷 또는 전용선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 등을 지칭하며, 모바일 데이터통신에 이용되는 이동통신기기, ARS에 연결된 전화기도 해당될 수 있다.

기업금융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금융의 개념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사고’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에서의 금융사고의 정의를 검토하여 이에서 유추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거래에 있어서 금융사고란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 안팎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초래 행위나 금융관련 범죄 행위⁸⁾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임원 또는 직원이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스스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⁹⁾를 저지름으로써 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일반적인 금융사고의 개념이 기존의 창구거래를 주도하는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금융사고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즉, 사고수범이 정교해 지면서 신용정보·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외부인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은행의 특정권역에 그치지 않고 보험, 증권, 카드대금 등 여러분야에 연계되어 사고가 발행하고,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와 같이 거래 당사자 간에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운 쌍방 무과실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금융사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유추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서비스, 거래지시의 과정에서 접근매체의 위·

8) 금융관련 범죄사고는 ‘형법’, 기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기·공갈·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무인가 금융업행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로 의미한다.

9) 금융업무의 부당취급은 ‘은행법’을 비롯한 보험·증권·상호저축 은행 등 해당 금융업의 법령이나 감독당국이 발하는 규정,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라든가 금융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반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10) 정창모, 「금융사고」, 매일경제신문사, 2006, 191쪽.

변조 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자금융거래 관련 입법체계

(1) 전자금융거래 관련 입법현황

우리나라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법·규정 중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나, 전자금융거래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법·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상에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다른 법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의 계약상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과 전자문서에 적용되며,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특히 인터넷뱅킹의 공인인증서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경우 신용카드의 위조 또는 변조된 사용, 부득이한 상황에서의 비밀번호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6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의 경우 제3장에서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관리기관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다(동법 제15조 내지 제17조).

또한,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이 제정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는

동시행세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전자금융업자 허가·등록 기준 추가 및 신종 전자금융거래 수단의 안전기준이 추가되었다.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원칙적으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제7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11조).

특히 제5조(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가 개정되어 2007년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이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별로 1억원에서 20억원까지¹¹⁾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사내에 유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새로 도입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은행 77개, 증권 45개, 보험 31개, 상호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4,165개 등 총 4,337개의 금융기관이 가입대상이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¹²⁾ 시장규모는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약 110 억원으로 예상된다.¹³⁾

11) 전자금융사고율 및 전자금융업 지급결제수단의 특성, 기타 전자금융업 현황을 고려하여 보험금액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07. 1. 4.

12) <표- 2> 금융업종별 보험금액 기준

구 분	보험금액	대 상 기 관
은행권역	20억원	-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10억원	- 지방은행, 외은지점,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권역	5억원	- 증권회사, 증권금융, 선물업자
기 타	1억원	- 위 이외의 금융기관(보험회사,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자료 : 금융감독원>

13)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2007. 1. 4.

3. 전자금융의 이용과 사고

(1) 전자금융 이용현황

IT기술의 발달로 CD/ATM에서 장표기반 지급결제수단의 전자방식 납부, IC칩과 CD/ATM간의 정보교환, 금융공동망과 근거리 이동통신의 접목, 휴대폰에 탑재된 현금카드 기능 등 기존의 지급결제수단에 다양한 융합이 일어났다.

또한, 디지털 컨버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최근 U-Payment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전자금융은 이용자의 이용형태가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날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용금액과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3/4분기 중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거래 건수는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965백만건으로 총 자금이체 건수(1,250백만건)의 77.3%이며, 전자자금이체 금액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1,826조 원으로 전체 자금이체금액(9,823조원)의 18.6%이다.

경로별 비중(전자금융)은 인터넷뱅킹 81.2%(1,482조원), CD/ATM 9.8%(179조원), 폰뱅킹 8.6%(157조원)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금융 가입자 수는 전분기 대비 3.8% 증가(2,334천명)한 63,314천명이며, 경로별로 인터넷뱅킹(30,595천명), 폰뱅킹(29,984천명), 모바일뱅킹(2,735천명 : 모바일뱅킹 가입자수는 전분기 대비 10.3% 증가)한 상황이다.

14) U-Payment의 중심은 블루투스(Bluetooth), WiBro, 광대역통합망,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다양한 기술, 네트워크, 서비스의 융합이 용이한 휴대폰이 될 것이라 전망되며, 2005년 유럽중앙은행(ECB)의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표준화와 상호호환성, 문화적, 법·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건수는 전분기 대비 3.2% 증가한 54백만건으로 전체 거래건수(805백만건)의 6.8% 차지하였으며, 온라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분기 대비 4.3천억원 증가한 17.3조원으로 전체 신용카드 거래금액(81조원)의 21.4%로 나타났다.¹⁵⁾

특히, 은행의 경우 장표를 이용한 거래와 전자방식을 이용한 거래의 건수 및 결제금액의 변화추이를 통해 전자금융 발전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표-3>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증감현황

구 분	2001. 12.	2002. 12.	2003. 12.	2004. 12.	2005. 12.
전자금융서비스*	57.7	60.0	65.9	69.9	69.9
창구거래	42.2	40.0	34.1	30.1	30.1

* CD/ATM,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처리 비중

<자료 : 한국은행 홈페이지, 재구성>

(2) 전자금융사고의 유형 및 현황

전자금융거래의 취약한 사용자 인증을 악용한 전자금융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7월 국내 특정은행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수집하는 피싱사기 사이트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인터넷 뱅킹 서비스의 해킹 사고는 전자금융의 특징을 역으로 이용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금전적인 손실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창구거래에 비해 그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1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 12. 18.

이러한 금융사고에는 해커가 인터넷 상에서 해킹이나 피싱 등으로 획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커 자신이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정상적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예금을 불법 인출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전자금융사고의 새로운 유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기 건수가 증가하여 문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싱(Phishing)’, ‘키로깅(Keylogging)’, ‘파밍(Pharming)’ 등이 해당된다.

피싱은 금융기관 명의로 e-mail을 발송하여 미리 작성된 가짜 웹사이트에 연결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며, 파밍은 피싱이 정교하게 발전된 형태로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수법이다. 예컨대, 해커가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이용자들이 늘 이용하던 사이트로 오인하게 만든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키로깅 프로그램 감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주로 S/W 다운로드나 이메일 첨부파일, P2P 전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용자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키로깅 해킹 프로그램에 의하여 이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해커가 훔쳐봄으로써 발생된다.¹⁶⁾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개연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최근에는 전자적 범죄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 200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사고를 보면 해커가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에 넷데블(NetDevil)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게시하여 이를 접속하는 사람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도록 하였고, ○○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카페에 접속하여 자신도 모르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노출된 사건이다. 해커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 서비스로 5천만원을 인출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표-4> 전자금융 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터넷뱅킹	1(71)	-	1(3)	5(149)
텔레뱅킹	-	1(10)	5(162)	6(262)
카드복제	4(452)	6(66)	6(26)	-
계	5(523)	7(76)	12(191)	11(411)

<자료 :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자료, 2006. 10. 25.>

Ⅲ. 주요국의 관련 입법

1. 국제기구

(1) 국제연합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1987년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지침(UNCITRAL Legal Guide on Electronic Funds Transfers)’을 마련하였고, 1992년에는 ‘국제지금이체에 관한 모범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을 승인하였는데, 모범법 Article 5(1)(2)는 금융업자의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범법에서는 첫째, 지급이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지시인의 은행은 지시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와 함께 지시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해서는 변경할 수 없으나 지시인의 은행이 지급이체와 관련된 중대한 위험 때문에 특정한 지급지시를 인수하지 않으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¹⁷⁾

17)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redit Transfers, Article 14(1)(2).

둘째, 수취은행이 아닌 수신은행은 지급이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지시인은 지급이체의 이행에 있어서 지연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수취인이 청구할 수 있었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⁸⁾

(2)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 BIS) 산하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 : Basel Committee)는 감독 당국과 금융회사가 전자금융 및 전자화폐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제 구축시 참고할 수 있도록 1998년 3월 전자금융 및 전자화폐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for electronic banking and electronic money activities)를 발표하였다.

이후 1999년 11월 바젤위원회 산하에 Electronic Banking Group(EBG)를 결성하여 2000년 10월에 전자금융백서(Electronic Banking Group Initiatives and White Papers)를 발간하였으며, 2001년 5월에 이를 발전시켜 「전자금융 리스크관리 준칙」(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을 발표하였다.

이 준칙은 강제성을 가지거나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침(guidance)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아웃소싱 관계의 관리, 보안통제, 법률리스크 및 평판리스크 관리 등 우리법에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준칙 1~3에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한 감시’를 명시하였는데 이사회와 경영진은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감시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책임부여, 정책 및 통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

18) Ibid., Article 17(1)(3).

19) Risk Management Principles for Electronic Banking.

즉, 은행의 기존 리스크관리 절차, 보안통제절차, 아웃소싱담당업체에 대한 심사와 감시절차가 적절하게 평가되고 전자금융서비스에 즉시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경영진이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이 아웃소싱 관계 및 제3자 위탁에 대한 감시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①전자금융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아웃소싱이나 기타 제휴관계를 구축할 경우에 따른 리스크를 완전하게 이해, ②전자금융서비스에 관한 계약체결에 앞서 제3자 서비스제공자나 파트너의 능력과 재무상태에 관해 적절한 심사·검토를 실시, ③아웃소싱 또는 제휴관계에 있어 모든 당사자의 계약상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 ④아웃소싱된 전자금융시스템과 업무가 리스크관리, 보안, 프라이버시 정책 등에 관한 은행 자체 기준을 충족할 것, ⑤아웃소싱된 업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내·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감사범위는 최소한 당해 업무가 은행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해야 할 것, ⑥아웃소싱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적절한 비상계획을 수립, 비치 할 것 등을 들고 있다.

2. 미 국

미국의 경우 전자금융에 대한 규제는 큰 위험이 수반되는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중심으로 입법 또는 약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왔으며, 전자금융 전반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금융회사를 간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²⁰⁾

A. Board and Management Oversight (Principles 1 to 3):

1. Effective management oversight of e-banking activities.
2.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ecurity control process.
3. Comprehensive due diligence and management oversight process for outsourcing relationships and other third-party dependencies.

20)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2001. 10., 35쪽.

전자자금이체 전반을 규율하고 소비자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1978년에 연방법인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s Transfer Act)」을 제정하였고, 연방준비은행은 동 법을 기반으로 하여 1979년에 ‘전자자금이체 규정(Regulation E)’을 제정하였다.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 이후 거액자금이체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금융회사간 거액자금이체에 대한 권리·의무관계 및 이체의 효력을 규정하기 위해 1985년에 주법인 ‘통일상법 4A편(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4A)’을 제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법은 개인(소비자)들의 소액결제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보호 측면이 강한 반면, 통일상법전은 상업적 전자자금 내지 거액결제를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전자자금이체법상의 책임관련 규정

1) 무권한 자금이체

무권한 자금이체에 대한 소비자책임의 요건으로 무권한 이체에 사용된 접근매체가 ‘인수된 접근매체’일 것, ‘금융기관이 접근매체를 발행 받은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였을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무권한자금이체(위·변조, 무권대리에 의한 이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부담하되, 소비자의 책임을 일정수준으로 한정하였다.

예컨대, 무권한이체에 대하여 50달러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 이전에 발생한 무권한이체의 금액 중 적은 것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였다(2영업일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은 500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접근장치의 도난 또는 분실한 것을 안 후 2영업일 이내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거나 기간 계산서 송달 후 60일 이내에 그 계산

서에 나타난 무권한이체를 금융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책임은 500달러 또는 그에 따른 손실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²¹⁾

2) 시스템의 사고·장애에 따른 손실 발생시 책임

이체지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보면, 금융기관이 정확한 금액 또는 적시의 방법으로 이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예금을 소비자의 계좌에 대기하지 않음으로써 자금 불충분으로 차변이체를 실행하지 못

21) Regulation E §205.6 Liability of consumer for unauthorized transfers.

(b) Limitations on amount of liability. A consumer's liability for an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or a series of related unauthorized transfer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

- (1) Timely notice given. If the consumer notifies the financial institution within two business days after learning of the loss or theft of the access device, the consumer's liability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50 or the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that occur before notice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 (2) Timely notice not given. If the consumer fails to notify the financial institution within two business days after learning of the loss or theft of the access device, the consumer's liability shall not exceed the lesser of \$500 or the sum of :
 - (i) \$50 or the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that occur within the two business days, whichever is less;and
 - (ii) The amount of unauthorized transfers that occur after the close of two business days and before notice to the institution, provided the institution establishes that these transfers would not have occurred had the consumer notified the institution within that two-day period.
- (3) Periodic statement ; timely notice not given. A consumer must report an unauthorized electronic fund transfer that appears on a periodic statement within 60 day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transmittal of the statement to avoid liability for subsequent transfers. If the consumer fails to do so, the consumer's liability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unauthorized transfers that occur after the close of the 60 days and before notice to the institution, and that the institution establishes would not have occurred had the consumer notified the institution within the 60 days period. When an access device is involved in the unauthorized transfer, the consumer may be liable for other amounts set forth in paragraphs (b)(1) or (b)(2) of this section, as applicable.
- (4) Extension of time limits. If the consumer's delay in notifying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due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the institution shall extend the times specified above to a reasonable period.

한 경우, 사전수권 차변이체의 지급정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²²⁾

그러나 소비자의 계좌에 자금이 불충분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이체지시불이행이 일어났거나 소비자가 이체를 개시할 때 기술적 기능장애를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시스템의 사고·장애에 따른 손실로 고객의 정당한 전자자금이체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동 사고·장애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객에게 자금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간접손실을 모두 배상하도록 하였다.²³⁾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직접손실액만 부담하고,²⁴⁾ 천재지변 등 금융기관의 통제력을 벗어난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하였다.²⁵⁾

이와 같은 책임면책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절한 자금이체를 실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지며, 무권한 사전승인자금이체 발생시 동 이체가 사전 승인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2) 기타 전자금융거래 책임관련 규정

전자자금이체 내역에 대한 표준공시항목 제정 등 전자자금이체에 있어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의무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자금이체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동 법 및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신용카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신용보호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내의 ‘Truth in Lending Act’와

22) 15 U.S.C. §1693h(a).

23) 15 U.S.C. §1693h(a).

24) 15 U.S.C. §1693(c).

25) 15 U.S.C. §1693h(a)①, (b).

동 법을 근거로 한 연방준비은행의 Regulation Z에 의해 규제되는데, 여기에서는 사기거래 등에서 신용카드 소지자가 부담해야 할 한도를 50달러로 정하고 있으며, 주요 신용카드사들은 소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정책 (zero-liability)을 시행하고 있다.²⁶⁾

3. 독일

독일은 1999년 7월 독일 민법전을 개정하면서 자금이체계약·지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계약해지 절차, 수수료 등 보수, 이체실행기간 등 자금이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다.²⁷⁾

또한, 자금이체계약의 규정 중 사업자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처리지체에 대한 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분하여 입법하였으며, 배상청구권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1) 처리지체에 대한 책임

처리지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체자 또는 수익자가 지연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 자금이체기관은 이체자에게 지연기간에 관하여 이체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율은 그 해의 기본이율에 5%포인트를 가한 것으로 한다.²⁸⁾

자금이체가 처리기간의 경과시까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체자의 반환청구로부터 14 은행업무일의 유예기간 내에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체자는 자금이체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보수와 비용을 포함하여 보증금액(12,500유로)의 범위 내에서 이체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Mark Furletti, The Laws, Regulations, and Industry Practices That Protect Consumers Who Use Electronic Payment System : Policy Considerations, FRB of Philadelphia, 2005. 10.

27) BGB §676 a 내지 §676 c.

28) BGB §676 b(1).

(2) 무과실책임

무과실책임규정을 보면, 이체자의 청구권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반하여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다른 청구권 및 부당이득에 기한 청구권의 경우, 자금이체기관은 매개금융기관의 과실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단,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원인이 이체자가 지정한 매개금융기관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여기에서 정한 책임은 외국의 계좌에 대한 자금이체의 경우에는 25,000유로로 제한될 수 있고, 자금이체의 지연 또는 불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12,500유로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고의·중과실, 이자손해 및 금융기관이 특별히 인수한 위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²⁹⁾

제676조의 a, 제676조의 b 및 제676조의 c(1)과 다른 합의로서 이체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이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금액이 75,000유로를 넘는 경우,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영역 밖에 주소를 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기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³⁰⁾

(3) 배상청구권

자금이체의 실행이 지연된 원인이 매개금융기관의 책임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 매개금융기관은 자금이체기관이 제676조의b(1)에 정하여진 이체자의 청구권을 이행함으로써 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다.³¹⁾

또한 금융기관이 자신이 지정한 매개금융기관에 대하여 하자 있는 지시 또는 불완전한 지시를 함으로써 자금이체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

29) BGB §676 c(1).

30) BGB §676 c(3).

31) BGB §676 e(1).

우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은 자금이체기관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제676조의 c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에게 발생한 기타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³²⁾

4. 일 본

일본은 현재 『선불카드법』에 의거하여 은행과 카드사의 전자화폐 발행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없이 민·상법 등 일반 사법과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을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고,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의 표준약관으로 규율하고 있다.³³⁾

이 표준약관에는 위조카드 범죄 등에 대하여 은행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예금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은행이 보상하고, 그 입증책임은 금융기관이 지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은행이 보상하지 않는 사례는 타인에게 암호를 노출시킨 경우, 암호를 카드에 써서 소지하고 다닌 경우, 예금자의 잘못으로 카드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예금자에게 중대한 고의 내지 중대한

32) BGB §676 (3).

33) EU의 경우 전자화폐에 관하여 ‘Directive 2000/46’을 만들어 각국이 2002년 4월까지 법령에 반영할 전자화폐 관련 규제를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서는 전자화폐의 정의를 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통화적가치(monetary value)로서,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고 발행시 액면가치로 통용되며 발행자 외 제3자에게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하였고, 전자화폐발행자의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비은행 전자화폐기관(Electronic Money Institute)을 인정하되, 허용되는 업무범위를 한정하도록 즉, 전자화폐발행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비금융서비스로 제한하라고 각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전자화폐발행기관에 대한 감독은 1년에 2번 이상 점검(ensure)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자화폐의 가치저장 한도가 150유로 이하이면서 전자화폐의 총발행잔액이 5백만유로 이하이며, 6백만유로를 넘는 적인 없는 경우이거나, 전자화폐가 전자화폐기관이 속한 그룹 내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발행지역·발행대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동 지침의 적용이 배제된다. European Commission, “Questionnaire on the electronic money directive(2000/46/EC)”, 2005, p.2.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³⁴⁾

그러나 이러한 은행연합회의 표준약관은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마련되었으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피해자단체를 중심으로 입법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금융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자적지급서비스의 발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정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³⁵⁾

금융청에서 검토되고 있는 전자적지급서비스에 관한 주요 법정비과제는 서비스제공자의 과산시의 이용자보호, 전자적지급서비스에 관한 당사자간의 책임분담의 방법, 전자적지급서비스의 방법·수단을 들고 있다.³⁶⁾

5. 소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책임규정이 다른 나라 관련법의 책임규정 수준에 비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무권한 이체의 경우 일정한 수준의 소비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되, 금융기관과 매개금융기관과의 책임관계에서 본질적인 손해발생 원인이 이용자가 지정한 매개금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매개금융기관은 자금이체기관에 갈음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금융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없이, 현재 입법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34) 정윤선, “전자금융사고의 무과실책임원칙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경쟁저널, 2006. 6. 55쪽.

35) 金融庁, “新しい電子的支拂サービスの發展に向けた課題について”, 2006. 4. 26. (www.fsa.go.jp)

36) 金融庁, 「平成17事務年度版 白書」, 2006. (www.fsa.go.jp)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의 이용빈도가 높고,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의 이용범위가 확장될 여지가 많은 등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증가 비율을 고려한 입법이라 할지라도 과연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전자금융기관에 부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IV. 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원칙의 재정립

1. 서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비밀번호 위·변조 등 각종 사고발생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IT에 기반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주체인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이용자 모두 IT의 이용자라 볼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양 당사자인 금융기관과 이용자가 모두 IT 이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현상은 양쪽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IT 관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즉, 양자 모두 IT 이용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한다 하더라도 모든 IT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쌍방 무과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기관이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취약점을 보완하고 인터넷에 등장하는 최신의 해킹기술이나 바이러스에 항상 최상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³⁷⁾

그러므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쌍방 무과실 사고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37) 장병환,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보호문제의 유형과 특징”, 금융결제원, 2007. 4, 19쪽.

전자금융거래법상 쌍방 무과실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 주체가 금융기관으로 정해지고 금융보조자의 책임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았으나 이에 대한 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당사자별 책임원칙을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전자금융기관과 이용자간의 책임

(1) 개인이용자의 사고발생시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2항에서 이용자의 경과실은 보호되고 있으며, 중과실과 고의가 있는 경우도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³⁸⁾

이러한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금융 이용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이용자의 접근매체 관리 소홀, 공모에 의한 사고유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이용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이나 고의적으로 신용카드 거래를 한 뒤 분실신고를 하여 대금결제를 면제 받는 것, 은행에 직접 가서 현금을 인출해 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동료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인출을 의뢰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위임행위를 부인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과실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음을

3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기관도 IT 이용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이용자가 완벽하게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쌍방 무과실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점은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규정의 경우 전자금융사고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라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장차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무권한 전자금융거래는 금융업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오히려 이용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보안시스템의 적정성 확보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반드시 이용자의 사고예방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금융사고의 예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 사고의 유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장차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의 주의를 계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의 약점에 대한 완벽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점은 금융기관의 측면에서도 이용자와 다르지 않으므로, 전자금융사고의 예방과 피해액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법경제학적인 측면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책임규정상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미국 전자자금이체법의 입법형태와 같이 법과 시행령에서 쌍방 무과실 사고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책임분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의 자기재산 관리 책임³⁹⁾을 일정 수준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사고 경감을 위한 이용자의 노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법인이용자의 사고발생시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2호에서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을 제외한 법인 이용자의 경우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도록 하였다.

결국 법인 이용자는 전자금융기관이 법상 보안절차를 준수한 것이 입증된 쌍방 무과실의 경우 이용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최대 손해액 전액을 법인의 손실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다.

이러한 경우, 법상 경과실까지도 보호해주는 개인이용자의 보호의 정도에 비해 법인 이용자 보호의 정도가 지나치게 약화된 것이며, 이용자가 법인이라 할지라도 IT이용자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개인이용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도 법 적용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다른 관점으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의 경우와 달리 금융기관이 보안절차를 준수하는 등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도덕적 해이로

39)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 성질에 대해 우리나라, 일본, 독일의 통설은 위임계약설에 따른다. 지급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지시를 하여 이체하는 행위는 단순히 소비임치계약상의 임치물 반환(예금지급)이 아니라 위임인의 지시를 실행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688조 제3항에는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를 수입받은 전자금융기관이 과실 없이 무권한 거래를 실행시킨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한 주장도 있다(이에 대한 상세는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토론”,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이용자의 전자자금이체거래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기관(수입인)에게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위임자)가 자기재산의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시스템운영상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불공정 약관을 체결하는 등 금융기관 측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인 법인 측에서 은폐된 금융기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용자 책임을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⁴⁰⁾

이와 같이 금융거래 상대방인 전자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금융기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할 수도 없는 지위에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이용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2호에 의한 전자금융기관 면책의 경우라 할지라도 금융기관과 개별 약정한 약관에만 의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법인인 이용자가 책임지게 되는 상한 금액을 미국 전자금융거래법의 ‘이용자 책임범위의 한정’의 예와 같이 법과 시행령상에 한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전자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업자간의 책임

(1)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영역확대에 따른 문제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에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고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금융거래에 직접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이용자이지만,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대행 처리하는 아웃소싱업체, 공중통신

40) 즉,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인 금융기관은 거래를 처리할 전산시스템을 비롯하여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비용 등의 이유로 안전성 확보 대책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으며, 거래약관에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삽입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의 경우보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장병환, 앞의 논문, 21쪽.

망을 운영하는 통신회사, 금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각종 가맹점 등은 금융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하여 전자금융을 보조하는 보조자로서의 지위와 간접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이 우선 책임을 지고, 이들 금융보조자에게 구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IT 기술을 매개로 통신, 유통, 방송 등과 같이 그 동안 금융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던 영역에서 서비스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뱅킹(IC칩 기반의 m-commerce 인프라)⁴¹⁾ 아직은 소규모인 IPTV를 통한 지급결제서비스의 제공⁴²⁾ 등 금융기관과 보조금융기관과의 계약관계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참여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보조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까지 포함된 복잡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적용될 법·규정의 책임주체 및 분담에 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업무와 정보처리업무의 구분의 곤란, 업무책임주체간의 책임 입증에도 어려움이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1)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대금결제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하는 휴대폰결제를 제외한 모바일 지급결제 수단 중 IC칩 기반의 모바일뱅킹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고객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모바일뱅킹을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으로 활용함으로써 IC칩을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보급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결제, 현금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IC칩에 다양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장착될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모바일뱅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윤성, “정보통신기술이 지급결제수단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2007. 1. ; 이용희, “제3세대 이동통신과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발전방향”, 월간 금융, 2007. 4. 참조.

42) 금융기관은 용역제공형 사업자가 되어 직접 TV뱅킹이나 TV주식거래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상품판매형이나 콘텐츠제공형 사업자에게 결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IPTV에 참가할 수 있다. IPTV에서의 금융서비스와 결제서비스 제공과정에는 금융기관 이외에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사업자가 참가하게 되며 최종 이용자인 시청자가 있다. 백미연, “IPTV를 이용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전망”, 금융결제원, 2007. 4, 46쪽.

이러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앞으로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타 산업분야에서 금융산업분야로 관심을 갖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실제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은 이미지 하락에 대한 리스크 발생을 우려하여 금융기관과 금융보조기관과의 상대적 지위를 이용한 합의 예컨대,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이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있는 것으로 내부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합의가 될 경우가 발생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⁴³⁾

이와 같은 합의 후, 또는 실제 금융사고 발생의 원인이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있는 경우 제11조 관련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변제 자력이 없다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안게 되고,⁴⁴⁾ 이 경우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을 통한 피해비용의 전가가 있을 수 있다.

(2) 무과실책임주의의 변화

입법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전자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업자간의 책임분담의 문제에 대하여 재경부에서는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분쟁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 하였다.⁴⁵⁾

이 경우,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책임주체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없고(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의

43) 보조업자의 선정 및 주요 역할은 금융기관 등이 직접 선택 지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보조업자는 금융기관의 지배하에 놓인 종속관계에 있다고 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 2005. 6. 17. 37쪽.

44) 정운선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의 공청회 자료에서 “피해보상능력이 없는 보조업자를 사업파트너로 선정하였다면 이는 선정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 해당한다”고 하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 전가하고 있으며, 영세하나 기술력 있는 보조기관의 전자금융사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45) 이동욱, 앞의 책, 27쪽.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기관에 배상청구를 하게 될 것), 전자금융기관과 보조기관의 책임분담 및 구상비율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의 적용 기준이 없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에 적용되는 책임원칙에 대하여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이 법상 명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인 손해배상 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른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근거 조항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당시 참고가 되었던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엄격제조물책임을 적용하고자 할 때 제조결함, 디자인결함, 경고결함이 하나의 제조업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제조업체에 의해 발생한 경우 기존의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⁴⁶⁾

최근에 미국에서도 연대책임을 ‘비례과실(comparative negligence)’ 책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며,⁴⁷⁾ 기존 엄격제조물책임 관련 사건에서 연대책임의 적용으로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배상능력이 있는 피고가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사후에 구상하던 것에서 과실여부를 철저히 가려 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판의 방향도 바뀌고 있다.⁴⁸⁾

또한, 전자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기관의 관계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는 독일 민법전의 자금이체계약 관련 입법례를 보아도 매개금융기관의 과실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1차적 책임을 지나 본

46) 연대책임은 민사상의 관계에서 두 명 이상에 의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법인포함)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과 계약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 중의 한 사람에게 가해자 간 책임소제와 책임분담물에 상관없이 동업자 두 명 이상 모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엄격책임의 의미에 가까운 개념이다.

47) The American Tort Reform Association(ATRA),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form States”, <http://www.namic.org/reports/tortReform/JointAndSeveralLiability.asp> 참조.

48) Moreno v. S. H. Kress & Co., 54 Cal. App. 4th, 1997, p.782.

질적인 원인이 이체자가 지정한 매개금융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3) 비례과실책임으로의 전환

우리나라의 경우도 모바일뱅킹이나 IPTV 지급결제 서비스 가입의 경우에서처럼, 해당 전자금융기관과 협력계약이 체결된 전자금융보조기관을 이용자가 지정하여 거래한 경우, 전자금융보조기관에게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1차적인 책임을 모두 전자금융기관이 지게 되는 것은 과도한 책임부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장래의 전자금융보조기관은 타 분야의 경제적 입지를 갖춘 기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이용자와의 관계에서와 같이 경제적 약자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며, 과실입증비용의 부담부분에서의 법 경제학적 접근으로도 현행법상의 전자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기관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고,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는 비례과실책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것이 전자금융보조기관의 금융사고발생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우리 법의 일반책임원칙인 과실책임주의에 좀 더 근접한 입법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비례과실책임을 인정할 경우 책임이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제9조 제4항에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비례과실책임 인정에 따른 책임이행의 담보 수단으로써 보험 등의 가입이 필요할 것이다.

<표-5>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율대상 및 주요 업체

규율대상 업무		사 업 자		
		구 분	주요업체	
일반적 전자 금융업	전자 여·수신, 주식, 보험거래 등	금 융	은행, 증권, 보험, 채신관서 등	
		비금융		
전자 지급 거래업	전자자금이체	금 융	은행, 채신관서, 새마을금고 등	
		비금융	SKT(모네타 캐시) 등	
	전자화폐	금 융	은행, 신용카드사 등 (K-Cash, 몬텍스 등*)	
		비금융	SKT(모네타 캐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	금 융	은행 등	
		비금융	T-머니, OK-Cashbag 등	
	직불전자지급수단	금 융	은행 등	
		비금융	없 음	
	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Gateway)	금 융	없 음	
		비금융	이니시스, 데이콤 등	
전자금융 보조업	아웃소싱, 업무제휴	비금융	VAN사업	KICC 등
			ATM 아웃소싱	NICE 등
			전자고지 업체	빌플라자 등
	결제중계시스템	비금융	금융결제원	
	전자채권관리기관	비금융	금융결제원	

* 비금융사업자가 주로 진출한 분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발행업과 PG임.

<자료 : 이동욱, 『전자금융거래법』, 세창출판사, 2006, 재구성>

V. 결 론

전자금융거래법은 오랜 기간 동안의 입법 논의를 거쳐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제9조 및 제11조 책임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타 산업분야와 같이 IT기술의 발달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나 공익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의 성장과 함께 금융사고의 발생, 특히 쌍방 무과실 금융사고발생의 부정적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창구거래가 감소하고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는 현실과 전자화폐, 선불과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달, 모바일뱅킹, IPTV 지급결제서비스 등장 등 과거에 없던 새로운 지급수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사고도 더욱 지능화·전문화되어 개인정보·신용정보 유출에 의한 전자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과 함께 비금융기관의 참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영역이 모호성 때문에 책임규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과도한 책임부담 및 전자금융업무의 리스크로 남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용자와의 책임 관계에서 금융기관에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1차적 책임을 금융기관에게 지우는 등 다른 나라의 입법에 비해 엄격하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금융기관은 이용자와 함께 IT 기술의 이용자로써의 지위를 가지며, 쌍방 무과실 금융사고발생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고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손해를 분담하고 각 거래 당사자들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시각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전자금융기관과 이용자 간의 책임규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되, 개인이용자와 법인이용자를 구분하여 개별적인 책임한도를 정해줄 필요가 있다.

개인이용자의 경우는 자기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일정수준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전자금융사고 경감을 위한 이용자의 주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인이용자의 경우는 개인이용자와의 보호의 형평성의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우려의 측면에서 전자금융기관 면책의 경우에도 법인이용자가 책임져야할 금액의 상한을 정해주는 기준이 필요하다.

전자금융기관과 전자금융보조기관간의 책임에 있어서는 전자금융보조기관의 확대 경향과 이로 인한 전자금융사고의 유형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불가능 한 점, 전자금융사고의 원인이 전자금융보조기관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전자금융기관과 보조기관간의 비례과실책임 규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거래지시의 불이행, 부정확한 시기 및 방법으로 이행, 거래의 지연 등 의무불이행과 관련된 요건을 구체화하고, 거래지시의 불이행이나 지연의 경우에 이용자에 대한 이자지급의 명시 등 개별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있던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전자금융사고, 전자금융거래, 새로운 지급수단, 전자금융보조업자, 책임원칙

A Study on Principle of Liability with Electronic Finance accidents

Han, Joung - Mi*

Recently,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electronic devices take up over 50% of all transactions and as current situations call for appropriate measures in response to the growth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has become effective since January 1st, 2007.

The reality shows a sharp decline in transactions at bank windows while transactions using internet banking and electronic devices increase. Prepaid and debit electronic payment methods are advancing and new payment methods such as mobile banking and IPTV payment services are expanding even as we speak. To this end, electronic finance accidents are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professional, leading to a surge in electronic financial crimes caused by leakage in private and credit information. This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Regarding such issues i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recognizes absolut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matters of obligations between the institution and users and places the primary responsibility up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its relationships with third-party companies. The law imposes strict responsibilities in comparison to its foreign counterparts (§9 of the Korea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Researcher,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Ph. D. in law

However, financial institutions hold the position of 'IT User' along with end users and when financial accidents occur where both parties have absolute liability, the law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to reflect the fact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may be the victim rather than the aggressor. That is, the approach should be one that reduces the occurrences of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as well as dividing losses by way of minimizing losses in these accidents and strengthening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all related parties.

Therefore, in the face of an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 policy should stipulate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 recognize full liability regarding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institution and the end user. However, individual limits of responsibility should be set by dividing individual and corporate users, while transition should be made toward regulations that impose proportionate liabilities between the electronic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subsidiary institution.

KEY WORDS Electronic Finance Accidents,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New Payment Methods, Electronic Financial Subsidiary Institution, Principle of Liability